

용인시 과·소업무 지도담당 규정

| | | | |
|----|--------------|----|-------|
| 제정 | 2005. 10. 5 | 훈령 | 제206호 |
| 개정 | 2006. 10. 13 | 훈령 | 제241호 |
| | 2006. 12. 29 | 훈령 | 제247호 |
| | 2007. 7. 1 | 훈령 | 제260호 |
| | 2008. 12. 29 | 훈령 | 제276호 |
| | 2009. 6. 26 | 훈령 | 제285호 |
| | 2009. 12. 29 | 훈령 | 제292호 |
| | 2010. 12. 17 | 훈령 | 제311호 |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시 본청의 국장으로 하여금 과·소의 행정을 종합지도·지원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발전과 책임행정의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담당) ① 국장의 지도담당 및 협조담당은 별표와 같다.

② 과·소에 대하여 공통적인 지도사항과 특별히 지시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도책임을 진다.

제3조(지도감독) 국장은 과·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도·감독하여야 한다.

1. 전 직원의 근무상황, 지휘감독
2. 각종 업무의 추진상황 지도 및 지원
3. 일제지도를 요하는 사항과 시장이 특별히 지시한 사항

제4조(결재 또는 보고) 각 과·소장 및 전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국장에게 결재 또는 보고를 하여야 한다.

1. 과·소장 전결사항외의 중요한 사항
2. 과·소장 전결사항 중 중요한 사항
3. 기타 과·소 운영과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5조(시행에 필요한 사항) 이 규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칙

이 규정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용인시 과·소업무 지도담당 규정

부칙 <2006. 10. 13 훈령 제241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6. 12. 29 훈령 제247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7. 7. 1 훈령 제260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8. 12. 29 훈령 제276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6. 26 훈령 제285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9. 12. 29 훈령 제292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0. 12. 17 훈령 제311호>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 <개정 2010. 12. 17>

용인시 과·소업무 지도담당 및 협조담당

1. 지도담당

| 담당국장 | 담당관·과 | 비 고 |
|--------|---|-----|
| 자치행정국장 | 행정과, 정책기획과, 재정법무과, 회계과, 세정과, 정보통신과, 민원여권과 | |
| 문화복지국장 | 문화예술과, 관광과, 교육체육과, 복지위생과, 노인장애인과, 가족여성과 | |
| 경제환경국장 | 지역경제과, 기업지원과, 농업정책과, 산림과, 환경과, 청소행정과 | |
| 도시주택국장 | 도시계획과, 도시개발과, 도시디자인과, 주택과, 토지정보과 | |
| 건설교통국장 | 건설과, 교통정책과, 대중교통과, 차량등록과, 재난안전과, 하천방재과 | |

※ 공보관, 감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임.

2. 협조담당

| 구 분 | 사 업 소 명 | 비 고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문화복지국장 | 처인구·기흥구·수지구보건소, 평생교육원 | |
| 경제환경국장 | 농업기술센터 | |
| 건설교통국장 | 상하수도사업소, 도시사업소 | |